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7
----------	------

발의연월일 : 2026년 7월 31일

발의자 : 정혜영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비 지원 기준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2항)

3. 검토의견

가. 입법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에서 운영비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여 운영비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현행 제4조제2항의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지양하고"라는 규정은 선언적·권고적 표현으로 법적 구속력이 명확하지 않아 보조금 지원 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불명확한 표현을 삭제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입법 적정성

- 본 개정안은 의정동우회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운영비 지원 여부는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 및 보조금 심사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해당 문구 삭제만으로 운영비 지원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조문

의 법적 명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다. 법적 타당성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는 운영비 지원 기준이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보조금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됨.

라. 결론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불명확한 운영비 지원 관련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